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12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582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8. 9. 18.

판 결 선 고 2018.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3,675,800원, 지방교육세 29,200원, 농어촌특별세 1,350,980원, 가산세 2,924,870원[1]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취득세 가산세 2,907,47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36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17,040원의 합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12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30. [redacted]구 B 소재 지하 1층 C~D호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E 등이 아래와 같이 2013. 10. 4.부터 2016. 10. 1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가 2016. 10. 11.부터 현재까지 F이 'G'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으며, 허가된 영업장 면적은 76.05㎡이다.

순번	시작일자	종료일자	변경내용	영업자
1	2013. 10. 4.	2014. 10. 31.	H	E
2	2014. 10. 31.	2015. 9. 8.	G	I
3	2015. 9. 8.	2016. 10. 11.	G	J

나. 한편, 원고는 2012. 9. 3. 매매대금 159,996,54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4%의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6,399,860원, 지방교육세 639,980원, 농어촌특별세 319,990원 합계 7,359,8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1. 유흥주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현장조사'라 한다),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영업장과 인접한 'K'이란 상호의 유흥주점(허가된 영업장 면적은 149.64㎡, 이하 '이 사건 제1 영업장'이라 한다), 'L'란 상호의 유흥주점(허가된 영업장 면적은 436.49㎡, 이하 '이 사건 제2 영업장'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허가 현황과 달리 이 사건 영업장 76.05㎡와 이 사건 제1 영업장 중 117.42㎡[2]를 합한 193.47㎡가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업장에 존재하는 객실도 5개임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7. 10.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2. 8. 30. 후 5년 이내인 2017. 6. 1. 현재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실 수가 5개 이상

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영업장의 허가면적인 149.64㎡ 중 이 사건 제2 영업장이 사용하고 있는 32.22㎡를 뺀 면적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12

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중과요건에 해당되어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5항 제4호, 제16조 제1항 등에 따라 취득세 16,583,27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29,56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370,020원(가산세 포함) 합계 17,982,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제1 영업장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영업장과 이 사건 영업장을 합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2) 이 사건 영업장과 이 사건 제1 영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더라도 이는 임차인이 원고의 동의 없이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현장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조사서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동산 및 소유자 현황

관리	고급오락장		부동산 현황			소유자 현황		
번호	업소명	종류(업태)	소재지	구분	면적(㎡)	취득일	취득가액(원)	성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12

7	G	기타	이 사건 부동산	토지	9.3	2012. 8. 30.	159,996,542	원고
				건축물	76.05			

■ 고급오락장 신고/허가 현황

허가현황					영업자	
상호	업태	신고/허가 일자	허가면적 (공용포함)	객실수	성명	비 고
G	기타	2013. 10. 4.	38.2	3	F	영업자변경(2016. 10. 11.)

■ 조사결과

영업장 면적(㎡)					객실수	접객원수	고급오락장 과세여부	
계	객실(석)	무도장	조리장	기타			취득세	재산세
76.05	19.4		11.5	45.15	3(대기실 1개 포함)	임시사용	중과대상 (취득 후 5년 이내)	중과대상

※ 고급오락장 면적(㎡) 산출내역
▶ 전용면적(허가면적 또는 사용면적): 38.2㎡
▶ 공용면적(전체공용면적×해당전용면적/전체전용면적): 37.82㎡
▶ 건축물 중과과세 면적: 76.05㎡
▶ 토지 중과과세 면적: 9.30㎡ → 전체토지면적×{건물 중과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건물전체면적}/집합건물

■ 조사자 의견

- 2016년에는 전용, 공용포함 영업장면적이 76.05㎡로 100㎡ 미만에 해당되어 재산세 중과제외
- 2017년 현장 조사 결과 G(이 사건 영업장)와 L 유흥주점(이 사건 제2 영업장)이 동일한 영업자로 허가를 받았으나 2개의 영업장이 K(이 사건 제1 영업장)과의 사이에 떨어져 있어 영업하는데 불편함에 따라 K에서 허가받은 지하 M호~N호(영업장 면적: 149.64㎡) 중 지하 N호(32.22㎡) 영업장을 L에서 사용하고 G 영업장(76.05㎡)은 K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L'와 'G' 영업주(F)에게 확인하였고, 카운터도 K에서 하나로 관리하고 있음
- 따라서, G와 K에서 실제 사용하는 룸 개수는 총 5개(G-2개, K-3개)로 지방세법 제111조,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중과요건에 해당됨
- 취득세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유흥주점 중과요건에 해당되어 중과대상임
- 2017년도 재산세(건물, 토지)도 일반에서 중과로 전환

G 룸 일련번호 사진(계산대 없음) - G와 K 룸 번호가 일련번호로 연결되어 있음
G 유흥주점 룸 번호(Ⅴ, Ⅵ, ⅥP), K 유흥주점 룸 번호(Ⅰ, Ⅱ, Ⅲ)

2) 이 사건 현장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이 사건 제1 영업장에 대한 조사서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고급오락장 신고/허가 현황

허가현황					영업자	
상호	업태	신고/허가 일자	허가면적	객실수	성명	비 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12

			(공용포함)			
K	룸살롱	2017. 4. 5.	76.19		O	신규(2017. 4. 6.)

■ 조사결과

영업장 면적(㎡)					객실수	접객원수	고급오락장 과세여부	
계	객실(석)	무도장	조리장	기타			취득세	재산세
149.64	50.91		2.02	96.71	3	임시사용	제외 (취득 후 5년 경과)	중과대상

※ 고급오락장 면적(㎡) 산출내역
▶ 전용면적(허가면적 또는 사용면적): 76.19㎡
▶ 공용면적(전체공용면적×해당전용면적/전체전용면적): 73.45㎡
▶ 건축물 중과과세 면적: 149.64㎡
▶ 토지 중과과세 면적: 18.20㎡ → 전체토지면적×{건물 중과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건물전체면적}/집합건물

■ 조사자 의견

- 2017. 4. 6. 신규 영업허가
- 현장 조사 결과 'G'(이 사건 영업장)와 'L' 유흥주점(이 사건 제2 영업장)이 동일한 영업자로 허가를 받았으나 2개의 영업장이 K(이 사건 제1 영업장)과의 사이에 떨어져 있어 영업하는데 불편함에 따라 K에서 허가받은 지하 M호~N호(영업장면적 149.64㎡) 중 지하 N호(32.22㎡) 영업장을 L에서 사용하고 G 영업장(76.05㎡)은 K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L'와 'G' 영업주(F)에게 확인하였고, 카운터도 K에서 하나로 관리하고 있음
- 따라서, G와 K에서 실제 사용하는 룸 개수가 총 5개(G-2개, K-3개) 이고 K에서 허가받은 룸 사용면적이 영업장면적의 50%)를 초과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1조,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중과요건에 해당됨
- 취득세는 취득(2003. 3. 5. 외 2) 후 5년 경과로 중과제외
- 2017년 재산세(건물, 토지) 중과

3) 이 사건 현장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이 사건 제2 영업장에 대한 조사서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고급오락장 신고/허가 현황

허가현황					영업자	
상호	업태	신고/허가 일자	허가면적 (공용포함)	객실수	성명	비 고
L	룸살롱	2017. 4. 28.	213.3		F	신규(2017. 4. 28.)

■ 조사결과

영업장 면적(㎡)					객실수	접객원수	고급오락장 과세여부	
계	객실(석)	무도장	조리장	기타			취득세	재산세
436.49	130.76		7.48	298.25	7	5~6	제외 (취득 후 5년 경과)	중과대상

※ 고급오락장 면적(㎡) 산출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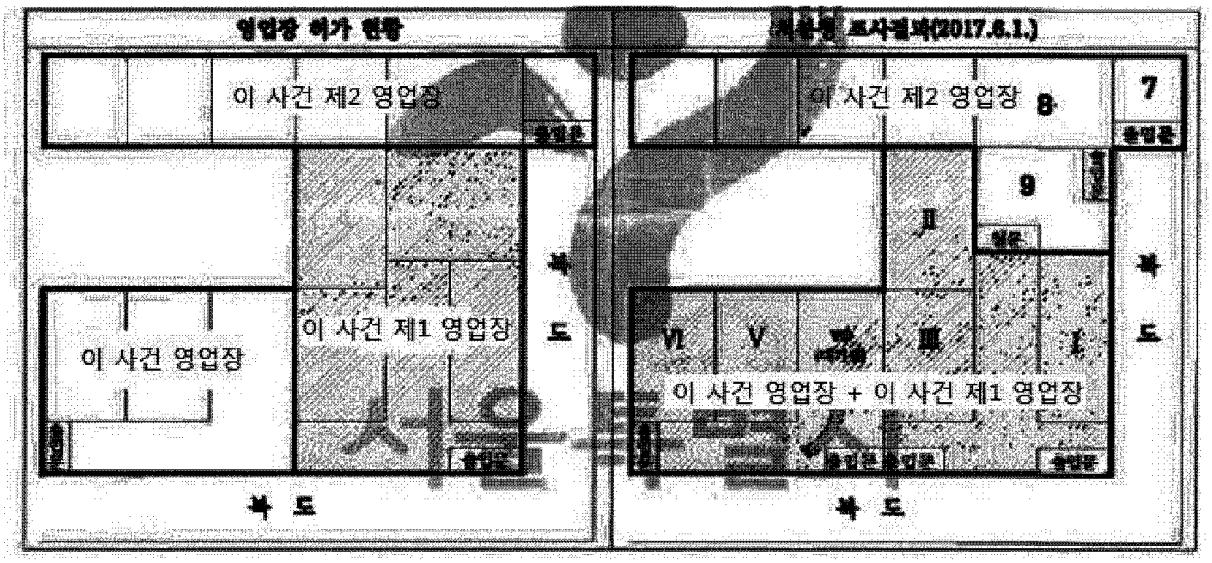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12

▶ 전용면적(허가면적 또는 사용면적): 213.3㎡
▶ 공용면적(전체공용면적×해당전용면적/전체전용면적): 223.19㎡
▶ 건축물 중과과세 면적: 436.49㎡
▶ 토지 중과과세 면적: 51.20㎡ → 전체토지면적×{건물 중과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건물전체면적}/집합건물

■ 조사자 의견

- 2017. 4. 28. 신규 영업허가
- 현장 조사 결과 전용, 공용 포함 전체 영업장면적이 436.49㎡로 룸 개수가 7개로 지방세법 제111조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규정에 해당
- 취득세는 취득(2003. 3. 5.) 후 5년 경과로 중과제외
- 2017년 재산세(건물, 토지) 중과

4) 이 사건 영업장 등의 허가현황과 피고의 조사결과에 따른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12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 본문에서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들고 있고, 제16조 제3항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5항은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규정하며,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업장소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부동산의 현황이 객관적으로 법령이 규정한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2393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12

영업장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2017. 6. 1. 현재 해당 영업장의 영업장소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운영되고 객실 수도 5개 이상이므로 이 사건 영업장은 중과세율에 따른 취득세가 추징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영업장과 이 사건 제1 영업장은 연접하여 있고, 그 사이에는 문이 있어 왕래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영업장의 객실의 번호는 로마자 Ⅴ과 Ⅵ로, 이 사건 제1 영업장의 객실 번호인 로마자 Ⅰ, Ⅱ, Ⅲ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사건 영업장과 이 사건 제1 영업장의 바닥무늬도 동일하다. 게다가 이 사건 영업장에 있는 VIP 대기실은 이 사건 영업장과 이 사건 제1 영업장 사이에 위치해 있다.

② 이 사건 현장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영업장에는 계산을 위한 카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영업에 필요한 주류를 보관하는 냉장고 등도 존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 사건 영업장과 이 사건 제2 영업장의 영업자인 F은 이 사건 영업장과 이 사건 제2 영업장이 떨어져 있어 이 사건 제1 영업장의 객실 1개를 F이 사용하고, 이 사건 영업장과 나머지 이 사건 제1 영업장의 객실을 이 사건 제1 영업장의 영업자인 O이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이 사건 영업장과 이 사건 제1 영업장의 일부가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되었다.

③ 원고는 그가 이 사건 제1 영업장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영업장과 이 사건 영업장을 합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고급오락장의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이른바 사치성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고급오락장의 취득으로 발현되는 높은 담세력을 근거로 이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12

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키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인 점,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고급오락장의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운영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에게 높은 담세력이 발현된다고 볼 수 있는 점, 하나의 영업장이 운영되는 부동산이 구분되어 일부 소유자가 소유한 부분이 100㎡ 이하라는 사정만으로 취득세 중과세율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하나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불합리할 뿐 아니라 하나의 영업장이 운영되는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지분을 가지는 소유자들이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영업장과 이 사건 제1 영업장이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었더라도 이는 임차인들 사이의 약정에 따른 것일 뿐 원고는 그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영업장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변경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경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12

판사 강동훈

판사 김주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12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12

■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끝.